

장애인기업 세제지원 필요성과 세수감 추계의 함의

임병인¹, 김성태², 서혜림^{3*}

¹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²청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³한수기업정책연구소 과장

An Estim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ed from a Tax Support Scheme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Implication

Byung-In Lim¹, Sung-Tai Kim², Hye-Rim Seo^{3*}

¹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eongju University

³Department Manager, Hansu Firm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동일하게 장애인기업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장애인기업들의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이 87% 이상이고, 2015년-2017년 3년 평균 기준 장애인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의 10.7배, 민간기업들의 20.3배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과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 선연적이고 임의조항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에 대한 실효성 확보로 유발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그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세수감소액 규모(5년간 약 1,301억원, 연 260.2억원)와 비교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장애인기업,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모의실험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quo of the support system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then estimates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ed from a special taxation system, same as one applied to social enterprises and standard workpla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Data for registered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20.6) by the Disable Enterprise Business Center. Now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more than 87% in the business continuity rate, and their employment rate of the average rate for 2015-2017 is higher than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which is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the disabled. However, article 14 (Support in Taxation) of the 「Act On The Facilit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till declarative and optional. Meanwhile, the corporate income tax reduced by a simulation method was calculated to be about KRW 130.1 billion for 5 years (KRW 26.02 billion per year). In this context, when comparing the tax revenue to be reduced with a positive effect by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14, it can be said that the tax support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feasible.

Key Words : Companie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ax support policy, Special taxation system,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Simul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isable Enterprise Business Center.

*Corresponding Author : Hye-Rim Seo(vhtks3121@naver.com)

Received September 30, 2021

Revised November 1, 2021

Accepted November 20, 2021

Published November 28, 2021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약 25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260만명을 넘어섰고, 2020년 말 현재 2,633,026명에 달한다[1]. 문제는 등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5년간 94만명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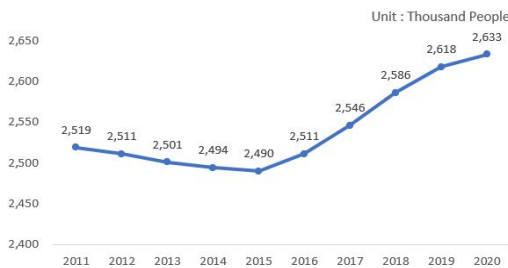


Fig. 1. Status quo of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year

Table 1에서 장애인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2020년 기준)을 전국 인구 기준과 비교할 때, 각각 25.6%p, 26.1%p 낮고 실업률이 약 2%p 더 높은 것에서 확인된다.

반면, 장애인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영업지속률은 2019년말 기준으로 87.7%에 달하고 일반기업 65%보다도 높다. 이는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¹⁾의 시행과 그간의 정부 정책노력도 기

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과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단순히 장애인을 소극적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장애인 증장기 계획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서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할 만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고 있는 2020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혁신성장이 최우선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창업기업수, 영업지속률 등의 지표들에서도 보여주듯이 장애인들의 창업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장애인들을 단순히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장애인들의 창업이나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정책의 지원과 개입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발표한 “지원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집”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부문, 민간부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공공기관은 평균 3.0%, 민간기관은 평균 1.6%임에도 장애인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1.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어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Table 1. Economic activ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	Population over 15 years ol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un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Subtotal	Employed	Unemployed				
Population with disabilities	2,562,873	949,047	893,392	55,654	1,613,826	37.0	5.9	34.9
Total Population (1,000 persons)	44,795	28,244	27,106	1,138	16,551	63.1	4.0	60.5

*Note: 1)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population over 15 years old)*100

2) Unemployment rate=(Number of unemployed/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100

3) Employment rate=(Number of employed/population over 15 years old)*100

*Sourc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istics Korea[2].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상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기업의 범위는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0이상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한편,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채용감소로 장애인 구직자의 구직 포기 급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유지지원,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제시한 뒤 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안은 장애인의 고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창출 등 직접적 효과에 있어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현행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제8조(장애인의 창업 지원 특례), 제9조(자금지원 우대),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제14조(세제 지원 등), 제15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어 최근에는 장애인기업에 대해 세제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20년 11월에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²⁾에서는 법의 전부개정안 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세제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주목할 대목이다³⁾. 이는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장애인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방안이 ‘세제지원’이라는 조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등 장애인 경제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가용가능한 자료로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유발될 세수감소액을 추계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공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장애인기업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준용하여 장애인기업을 지원해준다는 전제하에 세수감소액(또는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 선행연구들을 약술한다. 3장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4장에서는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할 경우의 조세감면액 규모를 추계, 제시한다. 5장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맺는다.

2. 선행연구

장애인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이며, 장애인 기업에 대한 연구는 Kim[5], Won et al.[6]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먼저 Kim[5]의 연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금융지원, 세제지원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밝히고,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세감면제도와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에도 세제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Won et al.[6]은 장애인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는 자금(운영, 설비자금 등)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세제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순임을 밝혔다. 특히, 세제지원정책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으므로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연구인 Choe[7]와 Lim & Moon[8]를 간략하게 논의해본다. Choe[7]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장려금과 같은 제도가 순수한 인센티브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순수한 인센티브 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세제지원의 장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과 수동적·수혜적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 경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수입 증가 등을 제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Lim & Moon[8]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통합데이터에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대분류 정책 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과 하위 정책 도구(총 18개의 세부제도)로 구분한 뒤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규제’ 및 ‘차별금지’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장애인 고용률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도적 지원’과 ‘금전적 지원 및 감면’ 등의 ‘보상’ 정책은 각각 전반적, 부분적으로 긍정적 효

2) 정태호 의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0. 11. 23)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 관련 연구로 Choe[9], Kim & Kim[10], Jung & Yoon[11] 등이 있다.

3. 장애인기업 정책지원 현황과 조세지원 필요성

일반적으로 기업활동 지원수단으로는 금융지원, 인력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수출지원,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등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대(對) 기업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수립되어 산업 또는 업종, 기업 규모, 지역 등에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Table 2. Status quo of budget for companie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 : Korean Million Won)

Classification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tart-up	4,009	3,889	3,889	2,431	2,229	4,844
Fund	-	-	-	-	-	-
Information	-	-	-	-	-	-
Technology	224	809	549	638	638	558
Manpower	-	-	-	-	-	-
Marketing	262	202	452	776	602	736

Source: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3]

장애인기업에게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규정대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없다. 이는 첫째, Table 2에서 세제지원 항목이 아예 없다는 것에서 확인된다[3]. Table 2의 장애인 기업 대상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창업지원은 2015년 40.1억원에서 2020년 48.4억원, 기술지원 예산도 2015년 2.2억원에서 2020년 5.6억원으로 2배 이상, 판로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7.4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이외 자금, 정보, 인력 지원예산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은 아예 항목조차 없다.

둘째,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Fig. 2에 따르면, “향후 장애인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세제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금융지원제도 75.1%, 판로지원제도 57.6%, 인력지원제도 44.4%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선행연구 등에서도 확인했듯이 장애인기업들에게 있어 금융 및 세제 등 자금지원 부분은 장애인의 창업 촉진과 경제력 향상에 대

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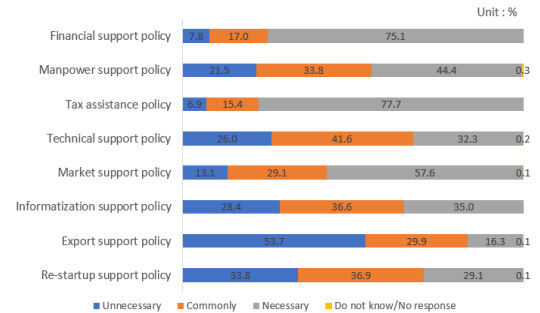


Fig. 2. Survey result of support policies to be needed for compan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셋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14조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언적이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개별 법률에서 세제지원의 근거를 둘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실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디에도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조문은 없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공익적 목적이 라는 측면에서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동법 “제2장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세제지원이 공익목적이라면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논리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중증 장애인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도입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3)

4. 장애인기업 세제지원액 추계와 함의

4.1 장애인기업에의 적용 세법

이상에서 살펴본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

3) 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22)

요성을 어떤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가 과제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세제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사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근거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방식을 채택한다. 이를 위해 선언적이고 임의규정에 불과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4조(세제지원 등)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6를 Table 3과 같이 비교해본다.

4.2 사용자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액을 추계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발표한 「장애인

등록기업분석」자료를 사용한다.

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등록기업은 인증만료기업을 포함하여 총 9,727개사(2020년 5월 기준 1회 이상 등록된 장애인기업 기준)이며, 이 중 정상영업 중인 기업은 전체 사업체 4,103,172개사 중 0.2%에 불과하다. 이들 장애인등록기업 중 38.2%인 3,740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2,000개(20.4%), 건설업 1,527개(15.6%)여서 3개 업종이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중에서 장애인등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인 0.2%보다 높은 업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1.5%, 건설업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0.8%, 제조업 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7% 등이었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act on the facilit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ct on the facilitation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p>Article 14 (Support in Taxation)</p> <p>(1)The Government may provide support in taxation to enterprises owned or operat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rovided for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other tax-related statu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enterprises owned or operat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xpand the foundation for their business operations, and to improve their business structures.</p> <p>(2)The Government may provide support in taxation to the Association (including the Business Center; hereafter in this Article the same shall apply) and its main business activities, as provided for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p> <p>(3)The Government may reckon the full value or amount of property or money contributed or donat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in necessary expenses or deductible expenses, as provided for by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p>	<p>Article 85-6 (Reduction or Exemption of Corporate Tax for Social Enterprises and Standard Workpla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 <p>(1) A national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s at December 31, 2022, is entitled to a full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or income tax on the income accruing from the relevant business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first income accrues from the relevant business (or the taxable year falling on the fifth anniversary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where no income accrues from the relevant business until the taxable year falling on such fifth anniversary), and also within the two subsequent taxable years from the date the following taxable year commences; and entitled to a tax reduction by the equivalent to 100/100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the two subsequent taxable years thereafter.</p> <p>(2) A national certified as a standard workpla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defined in subparagraph 8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t December 31, 2019, is entitled to a full exemption from corporate tax or income tax on the income accruing from the relevant business for the taxable year in which the first income accrues from the relevant business (or the taxable year falling on the fifth anniversary from the date of certification, where no income accrues from the relevant business until the taxable year falling on such fifth anniversary), and also within the two subsequent taxable years from the date the following taxable year commences; and entitled to a tax reduction by the equivalent to 50/100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the two subsequent taxable years thereafter.</p> <p>(3) During the reduction or exemption period to which paragraphs (1) and (2) apply, the amount of income tax or corporate tax that is reduced or exempted in the relevant taxable year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according to each of the following sub- paragraphs:</p> <p>1.For Koreans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under paragraph (1): 100 million won +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who fall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 20 million won</p> <p>2.For Koreans certified as standard workplaces for the disabled under paragraph (2): 100 million won +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who fall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20 million won</p>

한편, 동 자료에 제공된 재무정보에는 3개년(2016년 - 2018년)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근로자수, 인증 당시 최초/최종 상시근로자수와 장애인 종업원수, 최초인증일, 최종인증만료연도, 최종인증만료일 등이 있다. 이외에도 기

업체 개요(설립일, 업종, 대표자 장애유형과 정도, 주요 생산품목)와 장애인기업 인증 관련 정보와 지적 재산권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4.3 세수감소액 추계방법

세수감소액 또는 법인세 등의 감면 예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하였다. 현행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세제지원 대상 세목인데, 앞서 사용자료에서 언급하였듯이 재무정보에 소득세 추계에 필요한 정보는 없고, 법인세액 추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만이 있어 부득이 법인세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이 인증된 기업에게만 적용대상이므로 인증된 장애인기업과 2016년-2018년 당기순이익 정보를 연계하여 추계하였다.

인증과 관련하여 최종인증만료년도 기준으로 최종인증만료일이 2016년이면서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크면, 2016년-2018년 3개년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포함)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세제감면액 추계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방법으로 최종인증만료일이 2017년이면서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크면, 2017년-2018년 2개년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포함)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 최종인증만료일이 2018년이면서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크면, 2018년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를 추계하였다.

한편, 법조문에서 인증 후 5년 동안 혜택을 부여하므로 최초인증일 기준으로도 법인세를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초인증일 2016년이면서 당해연도 2016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 2016-2018년 당기순이익(순손실 포함) 3개년도 산술평균한 값을, 2017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 2017-2018년 당기순이익(순손실 포함)의 합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 2018년도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 추계기준으로 정하였다. 다음은 최초인증이 2017년이면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 2017-2018년 2개 연도의 당기순이익(순손실 포함)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연도 당기순이익만으로 법인세를 추계하였다. 다음으로 최초 인증일이 2018년이면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0보다 큰 경우, 그 순이익으로 법인세를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2018년 사이에 최초인증연도와 최종인증만료연도가 있는 경우를 감안하였는데, 해당 기업들은 2016년-2018년 3개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포함)의 산술평균으로 법인세를 추계하였다. 법인세율은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된 법인세액으로 첫 3년은 100% 감면, 그 후 2개년도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항에 따르면, “1억원 + 최종장애인종업원*2천만원”을 한도액이 있다. 따라서 앞서 추계한 법인세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만은 감면금액으로 하였다.

이상의 방법에 따라 추계한 결과, 대상기업은 2,052개였고 총감면액은 5년간 1,301억원, 연 260.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4.4 세제지원액 추계의 함의

현재 「국가재정법」에는 모든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의무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300억원) 이상의 신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의 추계 결과를 보면, 장애인기업에 세제지원 제도 도입을 전제로 추계한 법인세 감소액이 연간 260.2억원 규모로 추계되었다. 추계에 필요한 정보계약으로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겠지만, 추계 규모만 보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추계 대상기업이 분석 대상 장애인기업 중 2,052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과소 추정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장애인기업 세제지원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앞서 엄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기업 세제지원에는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구매 제도 등 이미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세제지원을 할 경우 그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과다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2005년 법 제정 이후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 장애인기업 창업율과 장애인 고용 규모가 공공과 민간부문을 월등하게 넘어선다는 점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 이후 3~7년이라는 ‘데스밸리(death valley)’ 기간에 많은 창업기업들이 폐업하는 비율이 40%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지만, 장애인기업의 영업 지속률은 87% 이상이라는 수

치에 근거할 때,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정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등의 세수 감면액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0년 6월 발표한 「장애인등록기업 분석자료」로서 사회적기업과 표준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지원액을 추계한 결과, 5년간 약 1,301억원(연 260.2억원)이 추계되었다.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 조세특례제도로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발표한 장애인고용활성화 정책에 제시된 장애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앞서 제시한 장애인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율이 공공의 10.7배, 민간의 20.3배 이상이라는 통계에 비추어 장애인고용 증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장애인이 정부정책의 시혜자가 아닌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계한 법인세 감면액 규모는 장애인기업 인증 정보와 그에 부합한 연도별 당기순이익 정보를 정확하게 연계시킬 수 없다는 점, 자료계약으로 소득세는 추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REFERENCES

[1] M. S. Jung. (2020). *Disabled registration status*. Seoul : MOHW

[2] H. J. kim et al. (2020). *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Seoul : KEAD

[3] T. H. Jung. (2020, Nov). *Policy Debate for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eoul : DEBC

[4] DEBC. (2020). *2019 The Disabled Enterprise*

Survey. Seoul : DEBC

[5] K. H. Kim. (2013).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Disabled enterprise Support Policies and their Solutions*.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Seoul.

[6] J. H. Won, J. S. Lee, S. J. Song & K. S. Kang. (2009, April).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Business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Disability Firm. *The 2009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pp. 243-250). Seoul : KSMS.

[7] J. C. Choe (2003). Tax Support Measures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Disabled. *Disability & Employment, 13(1)*. 87-101.

[8] D. J. Lim & S. H. Moon. (2016).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in South Korea.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25(1)*, 1-33.

[9] M. H. Choe(2003). A Study on the Process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 Focusing o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2(4)*, 33-62.

[10] K. S. Kim & Y. S. Kim. (2013). The Effec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Probability of Obtaining Job and the Amount of Salary for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3(1)*, 157-187. DOI : 10.15707/disem.2013.23.1.007

[11] H. S. Jung & S. Y. Yoon. (2020).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Focused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Journal of Human Ecology, 24(3)*, 109-124. DOI : 10.36357/johe.2020.24.3.109

임 병 인(Byung-In Lim)

[정회원]



- 1985년 2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0년 2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재정학, R&D, 정책평가
- E-Mail: billforest22@gmail.com

김 성 태(Sung-Tai Kim)

[정회원]



- 1978년 2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1987년 6월: Uni. of California, San Diego (경제학박사)
- 1989년 3월 ~ 2020년 2월: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 관심분야 : 재정학, 응용경제학
- E-Mail : stkim@cju.ac.kr

서 혜 림(Hye-Rim Seo)

[정회원]



- 2021년 2월: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2020년 12월 ~ 현재: 한수기업정책연구소 과장
- 관심분야 : 재정학
- E-Mail : vhtks3121@naver.com